제429회국회(정기회)
제1차 기획재정위원회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〉

▣ 문진석·황운하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0228호)

2025. 9.

기 획 재 정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최병권

목 차

Ⅰ. 제안경위 ····· 1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····· 1

Ⅲ. 참고사항 ····· 2

Ⅳ. 검토의견 ····· 3

1.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(안 제15조의2) ····· 3

Ⅰ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문진석의원・황운하의원 등 13인

나. 발 의 일 : 2025. 4. 29.

다. 회 부 일 : 2025. 4. 30.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・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. 이러한 사회적・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・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.

이에 예산 및 기금이 소득・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・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・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・제2항제2호의3 신설 등).

Ⅲ.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·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22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Ⅳ. 검토의견

1.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(안 제15조의2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○ **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** -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제출(예산서 작성·제출 및 결산서 작성은 「국가재정법」에 신설) -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 제출(기금운용계획서 작성·제출 및 기금결산서 작성은 「국가재정법」에 신설)

개정안은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227호)[1]의 의결을 전제로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.

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정부가 예산이 소득·자산의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산의 원칙에 명시하고, 예산 및 기금이 소득·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별도의 예산서·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·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'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'를 도입하려는 것임.

1)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문진석의원·황운하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10227호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○ **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 도입** - 예산의 원칙에 소득·자산의 재분배 관련 사항 규정 -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작성·제출 -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·제출 -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작성(제출은 「국가회계법」에 신설) -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 작성(제출은 「국가회계법」에 신설)

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는 재정정책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기금을 분석·평가하는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.

세계불평등연구소(World Inequality Lab)가 발표한 2022년 세계불평등보고서(World Inequality Report)에서 우리나라의 성인 인구 평균소득은 서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슷한[2] 높은 수준이지만, 소득 상위 10%와 하위 50% 간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[3]되어 서유럽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소득불평등이 더 심한 것[4]으로 분석하고 있음.

[대한민국 소득 상위 10%와 하위 50%의 소득점유율(1980-2021년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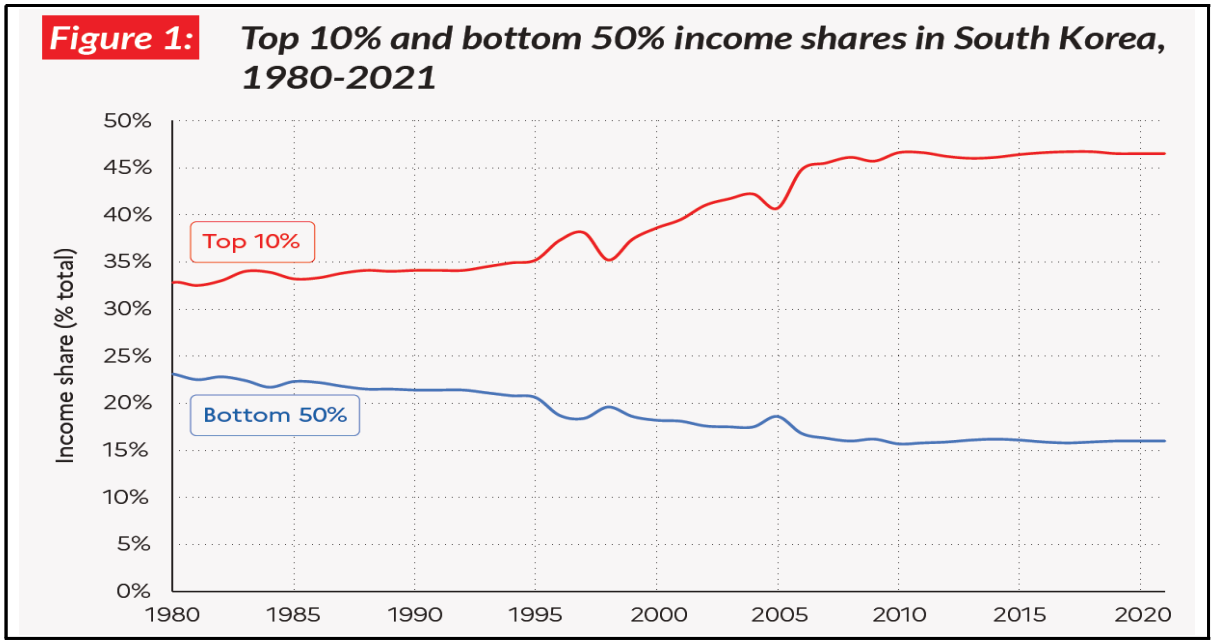

※ 자료: 2022년 세계불평등보고서(World Inequality Report)

2) 구매력평가(PPP) 환율 기준 약 3만 3,000유로(약 3,843만원)로 영국(3만2천700유로)·스페인(3만600유로)·이탈리아(2만9천100유로)보다는 높고, 프랑스(3만6천300유로)·독일(3만9천900유로)보다는 낮은 수준임.

3) 2021년 기준, 상위 10%의 소득점유률은 46.5%인 반면, 하위 50%의 소득점유률은 16.0%임.

4) 우리나라의 소득 기준 상위 10%와 하위 50%의 격차는 14배로 주요 서유럽 국가인 프랑스(7배), 이탈리아·스페인(8배), 영국(9배), 독일(10배)에 비해 차이가 있음.

또한, 통계청이 발표한 '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'에 따르면, 소득 5분위별 순자산이 전년에 비해 5분위에서 6.6%, 4분위에서 3.9% 증가하였지만 소득 3분위 이하에서는 감소하였으며, 자산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'순자산 지니계수[5]'도 올해 0.612로 1년 전보다 0.007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도 악화되고 있음.

[소득 5분위별 순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]

(단위: 만원, %, %p)

		전체	1분위	2분위	3분위	4분위	5분위
평균	2023년	43,540	15,284	24,135	34,505	46,944	96,825
	2024년	44,894	14,974	23,742	33,722	48,767	103,252
	증감	1,354	-310	-393	-782	1,823	6,427
	증감률	3.1	-2.0	-1.6	-2.3	3.9	6.6
점유율	2023년	100.0	7.0	11.1	15.9	21.6	44.5
	2024년	100.0	6.7	10.6	15.0	21.7	46.0
	전년차	-	-0.3	-0.5	-0.8	0.2	1.5

※ 자료: 통계청, '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'

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 및 세대·계층 간 갈등, 묻지마 범죄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정당국이 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,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는 재정정책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기금을 분석·평가하는 수단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어 보임.

특히, 현행 「국가재정법」에서도 "재정운용의 공공성"이 강조되고

5) 지니계수: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'0'이면 완전평등, '1'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함

있음을 고려할 때[6], 예산이 소득·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도 이러한 재정운용 공공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.

다만,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득·자산재분배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등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. 해당 제도의 도입에 앞서 선행 연구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면밀히 설계하고,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 계층별로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·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등 분석의 틀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.[7]

개정안은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.

---

6) **「국가재정법」 제1조(목적)** 이 법은 국가의 예산·기금·결산·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7) 기획재정부도 현재 소득·자산재분배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·평가를 위한 해외사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, 소득·자산불평등 문제는 예산·세제·규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, 이론적 근거·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족한 만큼 제도 도입에 앞서 도입 필요성, 효과 측정·분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※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)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(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	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) ①----------. 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
1. ~ 7의2. (생 략)	
<신 설>	7의3.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
8. ~ 12. (생 략)	8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	②----------.
1. ~ 2의2. (생 략)	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의3.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,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,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⑤ ----------. --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, 같은 항 제7호의3에 따른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----------성인지 기금결산서,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3에 따른 소득·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----------.

문 의 처
02)6788-5153